

유럽연합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럽지급명령절차 - 유럽공동체규정 제805조와 제1896조 중심으로 -

한 동 일*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와 제1896조 고찰
 - 1. 규정의 목적
 - 2. 소송법의 맥락에서 공통 기원을 가지는 두 규정
 - 3. 적용범위
 - 4. 민·상사 사건의 개념
 - 5. 재판 관할(재판적) 분쟁
 - 6. 집행절차
 - 7. 지급명령 집행
- III.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카를로 마노에서 시작하여 마키아벨리, 루이 14세,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와 정치가들의 유럽의 국가연합에 대한 구상 즉, ‘하나의 유럽’에 대한 이상은 오랜 꿈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동경은 다양한 국가들과 상이한 정치, 문화, 법체계, 국가 정체성으로 상징되는 유럽으로서는 불가능한 꿈에 가까웠다. 그러나 하나의 관점을 심화시키기 위해선 그러한 ‘다름(상이성)’은 본질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유럽인을 하나로 묶어 구심 역할을 해온 원칙과 가치들은 늘 존재해 왔다. 이러한 원칙들은 정치, 경제적 성격에

* 바티칸 사도와 대법원 Rota Romana 소송대리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비상임 책임연구원.

대한 그 밖의 동기들과 함께 기본적 이념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유럽 국가들을 연합하도록 이끌었다.¹⁾

국가연합에서 헌법은 특별히 중세와 근세 유럽 문화의 딸과 같은 국가의 고유문화를 옹호하는 방법으로 공동체 규범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장려되었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이 유럽연합 헌법에 담겨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제2차 세계대전, 정확히 1949년부터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의 분쟁을 불식시키고 경제력을 강화하여 미·소 양극구조 가운데에서 독자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창설된 것이 바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이다. 유럽공동체는 1967년 6월에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를 통합하여 개칭한 유럽공동체이다. 유럽공동체의 본래 목적은 역내 관세철폐와 대외공동관세 설정을 통해 관세동맹을 완성시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유럽공동체가 1992년 2월 7일을 기해 유럽동맹을 위한 단계별 실천 계획을 명시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경제 공동체에서 유럽연합(Unione Europea)으로 탈바꿈했다. 유럽연합은 유럽 공동체의 궁극적 목표로서 진정한 경제와 통화통합을 이룬 후 완전한 정치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렇듯 ‘하나의 유럽’에 대한 이상은 다분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출발하여 점차 정치적 성격으로 확대되어 갔다.²⁾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의 헌법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상의 토대 위에 유럽인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추출하여 하나의 법률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단순히 법적인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까지도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가 되기 위

1) 한동일, “La tutela dei valori religiosi nell'Unione Europea”, 「가톨릭신학」 제11호, 2007, 184면.

2) 유럽공동체의 목적은 원래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지, 법의 동화나 통합이 아니었다[Jürgen Basedow, The Gradual Emergence of European Private Law: 유럽사법의 점진적 형성(주지홍 역), 「法學研究」 제13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2. 10면]. 역내 시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른바 기본적 자유(Grundfreiheiten)의 원칙에 따라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들은 기존의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재화, 인력,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교역을 막는 새로운 제한 조치를 금지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 교역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다름 아닌 각국의 상이한 사법 조항들이었다(단일 시장 형성을 위해 당면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우리 문헌으로는 김영두, “유럽契約法에 대한 最近의 論議”, 「法學研究」 제15권 제1·2 통합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6, 226면 이하 참조).

해서는, 회원국 간의 심도 깊은 대화와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유럽연합 역내 회원국 간에 민·상사 사건과 관계하는 채무 변제(recupero dei crediti)에 관한, 가장 최근에 공포된 두 유럽공동체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규정 즉, 2004년 4월 21일 유럽의회와 각료 회의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럽집행권원과 관련한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와³⁾ 좀 더 최근인 2006년 12월 12일 공포된 지급 명령에 대한 유럽절차(procedimento europeo d'ingiunzione di pagamento)에 관한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를 승인하였는데,⁴⁾ 현재 각 회원국은 어떻게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한참 진행 중이다.

II.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와 제1896조 고찰

1. 규정의 목적

규정(regolamento)⁵⁾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상사 사건의

-
- 3) 유럽공동체규정 제805조는 2005년 1월 21일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2005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되었다. 규정의 기원에 대해서는 Tarzia, *Modelli europei per un processo civile uniforme*, in *Riv. dir. proc.*, 1999, p. 954; Picardi, *I presupposti socio-economici del titolo esecutivo europeo*, in *Doc. giust., Spec.*, 1996, 1, p. 161; Tarzia, *Le ingiunzioni di pagamento e il titolo esecutivo europeo*, *ivi*, p. 119; DeCesari, *Diritto internazionale privato e processuale comunitario*, Torino, 2005, p. 111; Olivieri, *Il titolo esecutivo europeo*, *cit.*, p. 62 ss.; De Cristofaro, *La crisi del monopolio statale dall'imperium all'esordio del titolo esecutivo europeo*, p. 114 ss.; Carpi, *L'ordine di pagamento europeo tra efficacia della tutela e garanzia della difesa*, in *Riv. dir. proc.*, 2002, p. 688 ss.
- 4) 유럽공동체규정 제1896조는 2006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 12월 12일부터 적용되었다. De Cesari, *op. cit.*, p. 119; Crifò, *First steps towards the harmonisation of civil procedure: the Regulation creating a European enforcement order for uncontested claims*, in *Civ. just. quar.*, 2005, p. 214 ss.; Porcelli, *La "nuova" proposta di procedimento europeo di ingiunzione pagamento*, in questa rivista, 2006, p. 1259 ss.; Carratta-Chizzini-Consolo-De Cristofaro, *Risposte al Libro Verde sul procedimento ingiuntivo europeo*, in *Int'l lis*, 2003, 3/4, p. 145 ss.
- 5) 유럽연합의 입법 종류는 법적 구속 효과를 갖는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등 세 종류와, 단순한 제안에 그치는 추천(recommendation) 및 의견(opinion) 등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 유럽공동체는 각국의 상이한 사법 규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정(Regulation; Regolamento; Verordnung)을 제정하거나 회원국 국내법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지침(Directive; Istruzione; Richtlinie)을 내리는 방법들을 사용하였다(박영복, “유럽에서의 民事法の 통일화”, 「比較私法」 제13권 2호(통권33호), 한

분쟁을 유럽연합 역내에서 간소화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데 있다. 이 두 규정의 기원은 공통적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가 먼저 태동하여 발전과 변화를 거듭한 뒤,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가 제정되었는데, 이는 처음 규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다.⁶⁾

암스테르담 조약 제4장 제61조는 동 조약 제65조에 규정된 민사 사법 협력 분야, 민·상사 사건에서 재판의 승인 및 집행 제도의 개선과 간소화, 재판 관할(재판적, *competenza giurisdizionale*) 갈등에 대해 역내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의 양립성 개선, 소송법 분야에서 사법 협력이 영국과 대륙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민사법 체계의 경우 민사 소송절차의 정당한 집행에 대한 장애 제거를 각료회의에서 채택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1999년 10월 15일에서 16일 핀란드 탐페레(Tampere) 유럽이사회(Consiglio Europeo)⁷⁾에서 소송법 분야의 통일화 조치에 대한 결의서로 발표된다.⁸⁾ 많은 공동체 규정 가운데 소송법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각국의 국내법을 통일, 조화, 조정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그 성과가 계속해서 공표된다는 사실이다.⁹⁾ 이러한 입법 사례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럽집행권원

국비교사법학회 2006. 6, 160면 참조). 현재까지 사법상 내용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에서 발효 중인 규정이나 지침은 모두 75개나 된다. 그런데 각각의 규정 또는 지침은 고유 목적과 범위가 있지만, 때로는 많은 지침들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전체적으로整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Jürgen Basedow, *Europäisches Privatrecht - Bedürfnis, Entwicklungsstränge, nationale Beiträge*, Vortrag Tokio 29.9.2005, S. 4.).

- 6) Lupoi, *Di crediti non contestati e procedimenti di ingiunzione: le ultime tappe dell'armonizzazione processuale in Europa*, in *Riv. trim. dir. pro. civ.*, vol. LXII-N.1, 2008, pp.171-172.
- 7) 유럽이사회(Consiglio Europeo; Conseil Européen; Europäische Rat; European Council)는 EU 회원국의 정상간 정례회담(유럽정상회의)으로서 EU내의 제도적 기구는 아니다. 이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이사회(Le Conseil de l'Union européenne; Rat der Europäischen Union; Council of European Union)는 유럽연합 내에서 규정(regulation)과 지침(directive)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및 예산 운용·편성권과 기관임원의 임명권 등을 가진 EU의 제도적 기구로서, 일명 유럽각료이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이사회라 함은 유럽이사회가 아니라 유럽연합이사회를 의미한다(송호영, “유럽연합(EU)에서의 民事法 統一化作業에 관한 研究”, 「민사법학」 제34호, 2006, 각주 17, 199-200면).
- 8) V. di recente Olivieri, *Il titolo esecutivo europeo e la sua attuazione nell'ordinamento italiano*, in *Riv. esec. forz.*, 2002, p. 62 ss.; Biavati, *I procedimenti civili semplificati e accelerati: il quadro europeo e riflessi italiani*, in questa rivista, 2002, p. 751 ss.
- 9)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채무불이행법리”, 「저스티스」 통권 제34권 제2호, 2001, 24면 참조.

을 규정한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 회원국 내의 민·상사사건의 재판 기록이나 재판 외의 문서 통지와 관련한 유럽공동체 규정 제1393조를 들 수 있다.¹⁰⁾

이 회기 중에도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는 역내 회원국 간에 채무 변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세 가지 우선적 조정(intervento prioritario) 분야를 나누었다.

첫째, 법원 판결의 송달(circolazione delle decisioni giudiziarie)에 관하여 유럽의회는 “형사와 마찬가지로 민사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내에서 사법 협력의 토대”로서 “상호승인 원칙”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원국 간에 집행문과 집행 절차의 송달 분야에서 승인집행(riconoscimento o *exequatur*)에 관한 모든 절차를 능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표했다.¹¹⁾ 이는 회원국 간에 긴밀한 신뢰와 협력, 규범의 동질성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실상 유럽공동체 규정은 1968년 브뤼셀 협약에서 파생한, 간편하고 신속한 승인 집행(riconoscimento/esecuzione) 제도와 유럽연합 내에서 송달에 관한 사법 규정의 장벽을 극복하고자 개정된 2001년 유럽공동체 규정 제44조 규정 이상으로 진일보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승인 제도에 대해 핀란드 탐페레(Tampere) 각료회의에서는 당사자의 기본 방어권 보호를 충분한 수준 정도로 보장하는 공동 제도를 창출하기 위하여, “몇몇 민사소송법 분야에 관한 최소 규범에 대한 정의”와 결부하였다.¹²⁾

둘째, 이 회기 중에 “지급 명령(ordini di pagamento)”에 대한 특별 언급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소송에 있어 신규 입법 절차 기획(predispone una nuova legislazione procedura nelle cause transnazionali)”에 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자격을 승인했다.

셋째, 탐페레(Tampere) 의정서는 민·상사사건 판결의 상호승인 원칙을 채택하기 위한 의회 추진 계획안이 수립되었는데,¹³⁾ 여기에는 시간적 제한을 두지

10) Castellaneta, *Un sistema alternativo alle regole interne limitato ai crediti di carattere monetario*, in *Riv. Guida al Diritto*, n.1/2009, p. 6.

11) De Cristofaro, *La crisi del monopolio statale dall'imperium all'esordio del titolo esecutivo europeo*, in *Int'l lis*, 2004, p. 141 ss.

12) Lupoi, *op. cit.*, pp. 172-173.

13) In G.u.C.e., 15 gennaio 2001, n. C12, p. 1. Cfr. Tarzia, *L'ordine europeo del processo civile*, in *Riv. dir. proc.*, 2001, p. 902 ss.

얇고(scadenze fisse) 점진적 개혁안과 더불어 지속적 발전을 위해, 비승인 판결의 번역에서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유효한 판결 집행을 보장하는 표준 문서(misure atte)로 옮겨갔으며, 마침내 몇몇 분야에서 유럽집행권원(titolo esecutivo europeo)과 구별되는 외국 판결에 관한 모든 단순 심사에 대해 폐지하게 되었다.¹⁴⁾

2. 소송법의 맥락에서 공통 기원을 가지는 두 규정

2004년 4월 21일 유럽의회와 각료회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럽집행권원을 제정한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를 승인하였으며, 좀 더 최근인 2006년 12월 12일에는 지급 명령에 대한 유럽 절차를 제정한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를 승인하였다.

이 두 규정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며 주요 법률적 유추를 제시한다. 하지만 두 규정은 서로 상당히 상이한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사실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는 국내 민사소송법을 보존하면서, 상호승인의 원칙을 실현하고, 집행 제도를 능가하는, 최소한의 한정표준절차에 합치한 집행 절차와 집행문의 유럽 집행법을 매개로 간접적 통일화(조화, 조정, armonizzazione)를 촉진하길 바란다.¹⁵⁾ 결과적으로 제805조 규정은 회원국에 최소한의 표준절차채택을 의무 지우지 아니하나, 최소 규범 적용의 전제 조건으로 다른 회원국에서 법원 판결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장려하며, 각 나라에서 제시하는 “판결문 송달(servizio giurisdizionale)”의 종류로 인한 분쟁 때문에 회원국 간에 지불이 지체되지 않도록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실상 역내 민사 교류의 가장 큰 장애는 송달 문제였다. 왜냐하면 송달을 피고에게 절차 개시의 고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권 행사로 파악하는 한, 외국 송달은 기술적으로 번잡할 뿐 아니라 번역의 필요상 고비용을 피할 수 없으며,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 왜곡될 위험이 상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14)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 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사집행법 26, 1).

15) Fumagalli, *Il titolo esecutivo europeo per i crediti non contestati nel regolamento comunitario n. 805/2004*, in *Riv. dir. proc.*, 2006, p. 25.

1965년 11월 15일 헤이그 송달 협약에도 그대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외국 판결이 흔히 브뤼셀 협약 제27조 제2호가 규정하는 송달 하자로 인하여 승인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¹⁶⁾ 아울러 직권송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륙법계와 당사자송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영미법계가 쉽게 조화되기 어려운 역사를 수송달국의 법원 공무원에 의한 직접송달방식을 허용한 1928년 영·독 민사사법 공조조약이 잘 말해 주고 있다.¹⁷⁾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는 유럽집행권원에 대한 논리적 발전을 나타낸다. 제1896조 규정은 채권자의 특정 항목은 역내에서 자동집행 규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회원국 간에 공동 절차(procedimento comune)를 제정한다. 소송법의 통일화라는 차원에서, 제1896조 규정은 적어도 그 의도에 있어서 제805조의 유럽집행권원 규정보다 분명 더 “과감한(audace)”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상이한 관점과 전망을 가지더라도, 두 규정은 회원국의 소송법 통일화라는 목적에 지대한 역할을 전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법이 역내 다른 회원국의 법률 체계와 상이하더라도, 여러 회원국의 판사와 변호사, 당사자 간에 대화와 협력을 위해 규정 방식이나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공동 절차”를 채택한다. 즉, 역내 회원국 간에 상이한 법률 체계를 가지더라도, 동일한 법적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용이한 법적 이해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집행 절차를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계약” “손해” 또는 “불이행” 등 각국마다 상이한 법적 개념을 극복하고 공통의 용어나 개념을 사용하여 현존하는 유럽공동체법 사이의 부조화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¹⁸⁾

두 규정 모두 “채무불이행(crediti non contestati)”에 대해 언급하는데, 실상 그 성격과 실체는 민사상의 계쟁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recupero in massa di crediti)를 용이하게 하도록 촉구한다. 이는 회원국의 민·상사사건에 관련한 방대한 민사소송(계쟁, contenzioso)을 다룬다.¹⁹⁾ 따라서 재판관의 개입은 채무

16) 김용진, “공동체법으로서의 유럽민사소송법의 발전과정”, 「저스티스」 통권 제87호, 2005, 124면.

17) 상계서, 131면.

18) Lupoi, *op. cit.*, p. 174.

19) Cfr. Cifrò, *op. cit.*, p. 202; Consalvi, *Il titolo esecutivo europeo in materia di crediti non contestati*, in www.judicium.it, p. 2.

존재의 조사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불 금액의 강제 이행을 허가하는 적절한 집행 규정을 발행하는 것이다. 채무 변제를 위한 집행 법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능은 지불금 연기(채무 지연)로 도산(지급불능, insolvenza) 위험으로부터 기업의 생존을 보호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역내 단일 시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채무자 측의 성의 없는 태도에 대한 중요 억제책도 형성한다.²⁰⁾

다국적 기업과 관련한 특별 언급과 함께, 두 규정은 보다 신속한 구제 수단과 보정을 보장하고, 회원국의 법정지법(lex fori) 규정보다 더 명확한 규정뿐만 아니라 ‘브뤼셀 협약I-규정’보다 더 “진일보(più avanzate)” 된 규정이다.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와 제1896조는 법정지법과 비교하여 새로운 제도와 수속 절차(procedimento)를 파생하며,²¹⁾ 채권자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도 겸한다.²²⁾

3. 적용범위

두 규정 모두 다국적 기업의 민사상 소송(contenzioso transnazionale)에 대해 언급하지만,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사실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는 역내 집행문 부여 절차의 송달을 규정한다. 따라서 동조의 적용 범위는 여러 회원국 간에 사법협력 규정이다. 다시 말해서 유럽집행권원으로 규정과 행위를 인증하는 것이다.²³⁾

반면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 제22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사법기관의 성격에서 독립된 민·상사 사건과 관련한 “공동체 민사소송(controversia transfrontaliera)”에 제한하여 본래 이행 청구권(지불이행 명령)에 대한 유럽 민사소송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규정 적용 제외 대상을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제외 대상으로는 첫째 세무, 세관, 행정 분야이다. 또한 새 규정들에는 공권력(acta iure

20) Carpi, *Dal riconoscimento delle decisioni all'esecuzione automatica*, in *Riv. dir. proc.*, 2005, p. 1136.

21) Fumagalli, *op. cit.*, p. 25; Porcelli, *op. cit.*, p. 1263 ss.

22) 유럽공동체규정 제1896조 제1항, 제805조 제27항.

23) Lupoi, *op. cit.*, p. 176.

imperii) 행사에 있어 집행이나 누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지만,²⁴⁾ 브뤼셀I-규정 제1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인수법(ius receptum)에 대한 단순 집행(sempllice esplicazione)을 다룬다.

둘째, 부부나 그에 준한 관계(regimi assimilati) 사이의 유언과 상속 제도, 도산, 협약이나 그에 준한 소송 절차, 사회보장, “계약외의 채무(extracontrattuali obblighi)에서 기인하는 채무”²⁵⁾는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²⁶⁾

셋째, 본 규정에 있어 회원국이라 함은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을 의미한다.²⁷⁾ 따라서 본 규정은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적용된다.

이에 대해 Porcelli와 같은 학자는 유럽연합 공동체 입법자들이 다소 용기 없는 선택을 하였다고 비판하는데,²⁸⁾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순수 역내 사건에 있어서도 사용가능한 민사소송통일 규정 부과를 회피하였기에, 새로운 규범의 직접적 통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과 관련한 혼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 제3조의 규정에 채택된 “공동체 민사소송(controversie transfrontaliere)”에 대한 정의를 되새겨보게 한다. 동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체 민사소송은 적어도 당사자 가운데 한편이 여러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에 주소나 상거소(residenza abituale)를 가지는 소송 구조 신청자는 소를 제기할 자격(giudice adito)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란 재판 관할(재판적, competenza giurisdizionale)과 민·상사 사건 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2000년 12월 22일 의회의 유럽공동체 규정 제44조 제59조와 제60조와 일치하여 결정되었다.²⁹⁾

24) “본 규정은 사법기구의 성격에서 독립된, 민·상사 사건에 관련한 공동체 민사 소송에 적용된다. 특별히 본 규정은 세무, 세관, 행정 분야와 공권력 행사에 있어 집행이나 누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배제한다”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 제2조 제1항). Campeis-DePauli, *Prime riflessioni sul titolo esecutivo europeo*, in www.judicium.it, p. 4.

25) 단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상(물건)이나 채무의 승인, 재산의 공동 소유로 인한 지불 채무와 관련되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참조).

26)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 제2조 제2항 참조.

27)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 제2조 제3항 참조.

28) Porcelli의 비판, *op. cit.*, p. 1266 ss.

29) GU L 12 del 16/1/2001, pag. 1. Regolamento modificato da ultimo dal regolamento (CE) n. 2245/2004 della Commissione (GU L 381 del 28/12/2004, pag. 10); 유럽공동체규정 제1896조 제3조 제2항 참조.

4. 민·상사 사건의 개념

두 규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용상의 이유(ratione materiae)로 2001년 제44조 규정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적용 범위를 구분할 수 없다.³⁰⁾ 사실 두 규정의 제2항은 브뤼셀 I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법기관의 성격을 배제하는 민·상사 사건에 적용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민·상사 사건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해 사법재판소와 개별 국가 재판관의 판례가 통일 규범으로 언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³¹⁾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는 사법 규정의 공통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유럽지급명령(l'ingiunzione europea di pagamento)”을 규제한다. 반면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럽집행권원의 목적을 고려함에 있어 훨씬 광범위하다. 사실 동 규정 제3조 제1항은 승인 판결, 화해, 공정 증서에 적용된다. 제805조 규정 제4조는 본래이행 청구권과 관련된 것으로 금전 채무와 비금전 채무로 나뉘어 적용된다.³²⁾ 반면 제1896조 규정 제4조는 지급명령 집행문이 제출된 금전 채무에 적용된다. 즉, 채무에 대한 본래이행 청구권이 유럽 지급명령 절차의 수용 조건을 구성한다.³³⁾ 나아가 제805조 규정은 채무의 “내용(원인, fonte)”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제1896조 규정은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채무는 본질적으로 계약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나 제1896조는 “채무 불이행(crediti non contestati)”에 관련해 적용된다. 그러나 유럽 지급명령 절차에 관한 규정의 의미에는, 약식 단계의 절차에서 채무자 측이 이의신청 목적이 없는 채권은 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805조 규정의 맥락에서 “집행문 부여 절차의 폐지(non contestazione)” 개념은 회원국의 법 규정에도 근거를 두면서, 소송 상황의 다원론을 통일하기 위한 더 일반적이며 타당한 규정이다.³⁴⁾

30)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재판 관할은 특별히 유럽공동체 규정 제44조에 적용되는 공통 법규와 일치하여 결정된다”(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 제6조 제1항).

31) Fumagalli, *op. cit.*, p. 27 ss.

32) Consalvi, *Il titolo esecutivo europeo, cit.*, p. 5.

33) “유럽 지급명령 절차는 유럽 지급명령 청구권이 제출된 날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일정 금액에 대한 금전 채무의 변제를 위해 제정되었다”(유럽공동체규정 제1896조 제4조).

34) Lupoi, *op. cit.*, p. 179.

이러한 관점에서 제805조 규정 제3조는 소송 상황과 이른바 소송 외의 “집행 문 부여 절차의 폐지”와 구분하면서, 유럽집행권원 부여 목적에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채무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설정한다.³⁵⁾

제1부류에 속하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 1) 판결 절차에서 승인이나 화해로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인정할 때.
- 2) 회원국의 법정지법에 규정된 관련 판결 절차에 따라 판결 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
- 3) 채무자가 절차에서 처음부터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하여 심리(공판)에 출두하지 않거나 결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행위는 늘 채무의 암시적 승인이나 법정지법에 따른 채권자의 첨부 서류(공서)와 동등하다. 가령 처음에는 다투지 않아 유럽집행권원이 성립하였는데, 그 후 결석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다툼 있는 채권으로 변환시켜 원고가 새로이 다시 집행 절차를 받게 하는 편법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 점에 비추어 집행국에서 불복 절차를 공서 유보의 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³⁶⁾

각각의 경우 이행 범위는 판사의 심사에 적용되는 집행 규약에 규정된다.

5. 재판관할(재판적) 분쟁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는 역내 집행권원의 송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나, 소를 제기할 자격에 대한 관할권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 즉,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의 적용 범위를 고려함에 있어서 유럽집행권원 규정 제44조와 일치한다. 반면 민·상사 사건 재판 관할권에 관한 공통 규범에 따라 판사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는 상충되어 보인다. 따라서 국내 소송 절차를 통제하는 것은, 채권자가 “불이행 채권 관련 판결”의 유럽집행권원으로 인증을 요구한다.³⁷⁾ 사실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그 나라의 판사가 선고한 판결을 증명해야 하고, 무엇보다도(inter alia) 제22조 증거 조사에

35) Lupoi, *op. loc. ult. cit.*, p. 179.

36) Stein, *IPRax*, 2004, 181, 191.

37) Olivieri, *op. cit.*, p. 7.

관한 재판적 규정과 제44조의 재판 관할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다.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 제6조 제1항은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재판 관할은 특별히 유럽공동체 규정 제44조에 적용되는 공통 법규와 일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브뤼셀 I-규정 제41조와 제44조에 따라 제1심법원 판사는 실제적 심사 권한이 박탈되었지만, 집행문 부여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존부에 대해서는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제1심법원이 승인 거부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하더라도 직권 조사나 증거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결석(缺席)’으로써 도피(逃避)나 본격적인 방어를 집행 국가 절차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송 전략은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되었다.³⁸⁾

6. 집행절차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유럽 지급명령을 개시하며, 표준 양식 기입에 있어서 동(同) 규정 제24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변호사의 참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동(同) 규정 제24조는 청구인(원고)이나 피고를 위해 변호사나 다른 법정 대리인의 참석은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2001년 유럽공동체 규정 제44조에 따라 관할 판사에게 청구 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이 없다면 피고의 주소가 있는 지역 판사에게 개인 신상 정보, 원금(credito principale) 및 상환 이자, 소(訴)의 근거(fondamento dell'azione), 청구권을 옹호할 수 있는 증거 기술과 함께 채권의 토대가 되는 청구 사유를 첨부 서류 A에 있는 양식에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³⁹⁾ 허위 기재나 진술은 회원국의 자국법에 따라 처벌된다.

금전적 측면이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절차(수속)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국가에서 수용하는 조건하에서 청구권의 제출을 문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자메일이나 팩스(elettronico)를 포함한 다른 모든 송달 방법이 허락된다.

동 규정 제8조 청구권 심사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의 진술(주장)과 채

38) Mankowski, RIW 2004, 587-588.

39) 첨부 서류는 VII까지 있으며, 표준 양식은 A에서 G까지 총 7가지 표준 양식이 있다.

권의 타당성을 위한 규정에서 제정한 조건을 심사하는 것은 관할 판사의 소관이다.⁴⁰⁾

채권자의 청구(소)에 인용 답서인 경우, 판사는 첨부 서류 V에 있는 표준 양식 F를 사용하여, “일심으로(quanto prima)” 유럽 지급명령을 내린다. 동 규정 제12조는 청구권 제출로부터 30일 이내라고 “규범으로(di norma)” 명시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소권소멸시효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구(소)가 기각되는 경우, 채무변제 문제는 국내 민사 소송법(piano interno)으로 이관된다. 사실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에서 청구 기각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non può formare oggetto di impugnazione)”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내 민사 소송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가 상소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유럽 지급명령 신규 청구를 제출하거나 국내 민사 소송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지급명령이 통지된 피고에게는 첨부서류 VI에 있는 표준 양식 F를 사용하여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진다. 판사가 일차 지급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즉시 지불 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불명령을 통지받은 30일 이내에 국내 민사 소송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⁴¹⁾

7. 지급명령 집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는 유럽공동체 규정 제44조에 위임하지만, 재판 관할과 유럽 지급명령 발행 절차에 대한 규정 이외에도, 집행문의 직접 송달과 각 국가의 사법권 승인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집행 단계의 심사와 관련된다.

사실상 집행을 위한 관할 판사의 소(訴) 재심사를 절대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집행문 부여 절차(exequatur)가 폐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유럽연합의 한 회원국 판사가 내린 유럽 지급명령은 즉각적으로 전 유럽의 사법 영역에서 집

40) Sacchettini, *Presentazione della domanda e opposizione possibili senza l'assistenza di un legale*, in *Guida al diritto*, n.1/2007, p. 63.

41) Castellaneta, *op. cit.*, pp. 8-9.

행되도록 한다. 따라서 재심사를 허가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집행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함으로써 집행단계는 자국의 사법권이 선고한 집행판결과 동일하게 규정하며, 집행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소관 사항이다. 이에 따라 집행국에서 집행문 부여 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예컨대 이탈리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직접 덴마크를 제외한 전 유럽의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이탈리아에 상거소를 가지는 채무자는 국내 사법기관의 어떤 개입도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 발행된 지급명령도 송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가령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집행국의 공식 언어로 지급명령의 번역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조건들을 제출하여, 원 국가의 판사가 발행한 유럽 지급명령 집행문을 집행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⁴²⁾

다음, 동 규정 제22조는 암시적으로 피고의 소(訴)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한 가정으로는 유럽 지급명령이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 제3국에서 이전에 발행한 같은 내용의 판결이나 동일 대상물 또는 같은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관련한 조치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결과로 초래된 가정들을 다룬다.⁴³⁾ 가령 이전에 발행한 지급명령이 집행 회원국에서 승인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⁴⁴⁾ 가령 집행 회원국의 관할 판사가 보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진행하거나 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 재심사 소의 제기가 집행을 차단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유럽 지급명령은 집행 회원국의 소의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⁴⁵⁾

III. 나오는 말

기존의 다른 공동체 규정들도 유럽 사법제도의 조화 및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입안되었지만, 소송법에 도입된 현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는 회원국의 국내 민사

42) 특별히 각 회원국에서 채택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Atlante giudiziario europeo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c.europa.eu/justice_home/judiciale-tlascivil/html/index_i.htm. Castellaneta, *op. cit.*, p. 9.

43)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 제22조 제1항 a 참조.

44)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 제22조 제1항 b 참조.

45)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 제22조 제3항 참조.

소송법을 부차적 방식이나, 유럽 규범에 대한 법률의 결여를 보완할 목적으로만 적용을 제한하는 최초의 통일된 유럽 민사 소송법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⁴⁶⁾

청구권에 관한 규범은 역내 회원국 간에 민·상사 사건에 관련된 채무 변제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규정 가운데 최근의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는 2006년 12월에 채택되어 2008년 12월 12일에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특별히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 채무 불이행에 관련한 민·상사 민사 소송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역내 회원국들은 그 적용 방법을 모색 중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규정 즉,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와 제1896조는 공통의 소송법적 기원을 가지는데, 전자가 논리적으로 발전과 결함을 보완한 다음 후자인 제1896조가 제정되었다. 이 두 유럽공동체 규정은 관할판사의 심사 권한에 대해 7가지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집행 단계의 모든 절차를 제거함으로써 민사 소송의 계쟁물이 아닌 채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변제를 가능케 하였다. 즉, 채무 변제를 위한 집행 법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능은 지불금 연기로 인한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채권자와 기업의 생존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역내 단일 시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채무자 측의 성의 없는 태도에 대한 중요 억제책도 형성하게 된다. 이는 1999년 5월 1일 효력을 발휘한 암스테르담 조약 제3장 도입부에 민사 사법 협력의 공동체화(통일화, *co-munitarizzazione della cooperazione giudiziaria civile*)란 밑그림에 삽입되었던 규정들이다. 즉, 민사 사법 협력 분야, 민·상사 사건에서 재판의 승인 및 집행 제도의 개선과 간소화, 재판 관할(*competenza giurisdizionale*) 갈등에 대해 역내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의 양립성을 개선하고, 소송법 분야에서 사법 협력이 영국과 대륙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민사법 체계의 경우 민사 소송 절차의 정당한 집행에 대한 장애 제거를 채택하도록 규정한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바대로 역내 시장에서 아무런 제약 없는 거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사법 규정을 통일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고찰한 유럽공동체 규정 제805조와 제

46) Finocchiaro, *Con l'introduzione delle norme processuali uniche fatto un balzo in avanti per l'armonizzazione europea*, in *Riv. Guida al Diritto*, n.1/2009, p. 21.

1896조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의 커다란 문화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유럽공동체 민사 소송법에 큰 족적을 남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동시에 최근 소송법의 명암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갈망과 바람이 반드시 법제도의 실질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유럽연합 공동체의 성격상 국내 민사 소송법과 유럽공동체 민사 소송법 간의 상호보완을 요구하며, 또한 초국가적 성격을 띠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사안은 국내 민사 소송법과 유럽공동체 민사 소송법 사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논쟁 가능성과 관련된다. 그러한 경우 논쟁은 유럽공동체 민사 소송법 편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해결하기 어려운 또 다른 사안은 본 규정을 결과적으로 적용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식화와 해석학적 기준에서 기인될 수 있다. 사실 유럽공동체 규정의 적용이라는 점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상이한 사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역내에서 통일된 적용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는 청구 기각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non può formare oggetto di impugnazione)”고 규정하기에,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채무 변제 문제는 국내 민사소송법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국내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가 상소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유럽공동체 규정 제1896조의 소송법적 기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규정의 보완이 요구되며 이는 새로운 규정의 입법을 예고하게 한다.

끝으로 유럽연합에서의 활발한 민사법 통일화 작업은 우리나라의 민·상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시장과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시점에서 우리도 민법상 국제화의 큰 흐름을 도외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논문투고일 : 2009. 5. 12, 논문심사일 : 2009. 6. 18, 게재확정일 : 2009. 6. 19.]



주제어

제도, 민상사소송, 채무불이행, 채무지급명령, 유럽의 (민사소송) 통일화

■ 참고문헌 ■

- 김남국, “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 김영두, “유럽契約法에 대한 最近의 論議”, 「法學研究」 제15권 제1·2 통합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김용진, “공동체법으로서의 유럽민사소송법의 발전과정”, 「저스티스」 통권 제 87호, 2005.
- 박영복, “유럽에서의 民事法의 통일화”, 「比較私法」 제13권 2호 (통권3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 송호영, “유럽연합(EU)에서의 民事法 統一化作業에 관한 研究”, 「민사법학」 제34호, 2006.
-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채무불이행법리”, 「저스티스」 통권 제34권 제2호, 2001.
- 채형복, “암스테르담조약과 EU 제기구의 개혁”, (한국프랑스학회, 1999).
- 한동일, La tutela dei diritti umani nell'Unione Europea, 「서강법학」 제10권, 2007.
- _____, La tutela dei valori religiosi nell'Unione Europea, 「가톨릭신학」 제 11호, 2008.
- Jürgen Basedow, The Gradual Emergence of European Private Law: 유럽사법의 점진적 형성(주지홍 譯), 「法學研究」 제13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2.
- Biavati. *I procedimenti civili semplificati e accelerati: il quadro europeo e riflessi italiani*, in *Riv. trim. dir. pro. civ.*, 2002.
- Carpi, *Dal riconoscimento delle decisioni all'esecuzione automatica*, in *Riv. dir. proc.*, 2005.
- _____, *L'ordine di pagamento europeo tra efficacia della tutela e garanzia della difesa*, in *Riv. dir. proc.*, 2002.
- Carratta-Chizzini-Consolo-DeCristofaro, *Risposte al Libro Verde sul proce-*

- dimento ingiuntivo europeo*, in *Int'l lis*, 2003.
- Castellaneta, *Un sistema alternativo alle regole interne limitato ai crediti di carattere monetario*, in *Riv. Guida al Diritto*, n.1/2009.
- Cohen J. *La Cour des Communautés européenne et le droits de l'homme*, in *Revue du Marché Commun*, 1978.
- Crifò, *First steps towards the harmonisation of civil procedure: the Regulation creating a European enforcement order for uncontested claims*, in *Civ. just. quar.*, 2005.
- De Cesari, *Diritto internazionale privato e processuale comunitario*, Torino, 2005.
- De Cristofaro, *La crisi del monopolio statale dall'imperium all'esordio del titolo esecutivo europeo*. in *Int'l lis*, 2004.
- Dubois L., *Le rôle de la Cour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Objet et portée de la protection*, in *Revue de droit international et de droit comparé*, 1981.
- Edward D.A.O., Lane R.C., *European Community Law. An Introduction*, Edinburgh, 1995, 3a ed.
- Gaia G., *Aspetti problematici della tutela dei diritti fondamentali nell'ordinamento comunitario*, in *R.D.I.*, 1988.
- Gautron J.C., *Droit européen*, Paris 2002, 10° ed.
- Falchi G.L., *Introduzione ai fondamenti del diritto Europeo*, Roma 2007.
- Fumagalli, *Il titolo esecutivo europeo per i crediti non contestati nel regolamento comunitario n. 805/2004*, in *Riv. dir. proc.*, 2006.
- Finocchiaro, *Con l'introduzione delle norme processuali uniche fatto un balzo in avanti per l'armonizzazione europea*, in *Riv. Guida al Diritto*, n.1/2009.
- Lupoi, *Di crediti non contestati e procedimenti di ingiunzione: le ultime tappe dell'armonizzazione processuale in Europa*, in *Riv. trim. dir. pro. civ.*, vol. LXII-N.1, 2008.

- Mastronardi F., *Storia dell'integrazione europea*, Napoli 2006.
- Mathijssen (P.S.R.F.), *A Guide to European Union Law*, London 1999, 7° ed.
- Nicolaysen G., *Europarecht*, Baden Baden 2002, 2a ed.
- Olivieri, *Il titolo esecutivo europeo e la sua attuazione nell'ordinamento italiano*, in *Riv. esec. forz.*, 2002.
- Oppermann T., *Europarecht*, München 1999, 2a ed.
- Picardi, *I presupposti socio-economici del titolo esecutivo europeo*, in *Doc. giust.*, Spec., 1996.
- Porcelli, *La "nuova" proposta di procedimento europeo di ingiunzione pagamento*, in questa rivista, 2006.
- Sacchetti, *Presentazione della domanda e opposizione possibili senza l'assistenza di un legale*, in *Guida al diritto*, n.1/2007
- Tarzia, *L'ordine europeo del processo civile*, in *Riv. dir. proc.*, 2001.
- _____, *Le iniunzioni di pagamento e il titolo esecutivo europeo*, in *Riv. dir. proc.*, 2001.
- _____, *Modelli europei per un processo civile uniforme*, in *Riv. dir. proc.*, 1999.



Abstract

Europeae Ratio de Creditorum non impugnatorum solutionis iussu in Unione Europea⁴⁷⁾

Tong Ill HAN

(Inquisitor, facultas legis civilis, Sogang Universitas)

Propositum consociationis inter Nationes Europae statim ad historiam nos reportat et ad omnes illos homines, philosophos politicosque, qui exoptaverunt Europam coniunctam, a Carolo Magno ad Macchiavelli, a rege Luigi XIV ad Napoleonem. Somnium quod numquam ad effectum perductum est, quia Europa etiam nunc ex Nationum("*Stati*") multitudine componitur, aliquae recentis creationis, omnes distinctae cultura sua et ratione iuridica sua, quarum quaeque peculiare virtutes singularium differentiumque identitatum nationum("*Stati*") imitatur. Tamen, inspecta diligentius, talis differentia profunda non est.

Principia et praecepta existunt, quae semper remanserunt et nunc officium centrale habent in iuridica europea sententia. Ulterior gradus in integrationis et europeae harmoniae itinere factus est recente iudicialium singularium normarum introductione, adhibendarum in omnibus Nationibus("*Stati*") partibus Unionis, excepta Danimarca.

Aliter ac quod provisum ab aliis praecedentibus Communitatis institutis, etiam ipsa tendentia ad harmoniam et unitatem iudicialium rationum Europae, iudiciales normae nunc introductae, praesertim Institutum n. 1896, primum iudiciales europeas singulares regulas introducunt, quae in inferiore loco na-

47) 본 초록은 라틴어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tionum normas collocant adhibendas solum raro et tantum ad complendas europeae disciplinae normarum lacunas.

Hae normae pertinent ad instituta de creditorum recuperatione in civili et commerciali re inter Nationes("*Stati*") Unionis partes.

Horum duorum Institutorum ultimum, n. 1896, sumptum in mense dicembri 2006, die 12 dicembri 2008 valuit et nunc intra europeas Nationes("*Stati*") adhiberi conatur, ad simplificandas et celeriores efficiendas in Unione Europea controversias in civili et commerciali re, praecipue quoad attinet credita non impugnata.

Talium Institutorum origo communis est: immo dicere possumus ea se collocare in eiusdem itineris evolutivi ambitu, cum alter alterius logicus progressus esset. Ex Communitatis legislatoris iudicio, talis ratio utilis esse deberet ad favendum creditorum non impugnatorum celeri et efficaci recuperationi, et usu septem modulorum "standard", cum inspectionum facultate ex competentibus iudicibus, et omnium rationum in executione eliminatione. Hoc favere deberet tum creditori qui, cum in difficultate esset ad recuperationem creditorum quae sibi debentur, in discrimen non solvendi venire potest, tum relationibus commercialibus inter singulas Nationes("*Stati*"). Talia Instituta se interponunt in ambitu coniunctionis cooperationis iudicialis civilis factae introductione Tituli IV in Amsterdam foedere diei 2 octobris 1997, quod die 1 maio 1999 valuit.

Patet talium normarum proprietatem europeam necessariam mutuaque integrationem Institutorum Europae et Nationum("*Stati*") postulare, etiam quia ipsorum proprietas transnationalis ducit ad duos magni momenti exitus. Horum primus pertinet ad discrepationem quae evenire potest inter Nationum("*Stati*") normas et Unionis normas. In hoc casu discrepatione resolvi potest pro Unionis normis, etiam si praecedentibus Unionis normas.

Deinde, alia incerta circumstantia causari potest prescriptione sua et criteriis interpretationis ideo adhibendis.

In adhibendis his institutis, nam, aequalis usus intra Unionem European praestandus erit, cum omnibus differentibus institutis iuridicis singularium Nationum("*Stati*") Unionis partium.

▶ Key words Institutio, Controversia in civili et commerciali re,
Creditum non impugnatum, Creditorum recuperatio,
Harmonia europea